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3
----------	-----

발의연월일 : 2024. 08. 23.

발의의원 : 김상수, 박경원, 이상기,
김영실, 이수련, 김지훈(민),
김지훈(국), 이진환

1. 제안 이유

기술자문위원회는 우리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로서, 자문 대상의 기준 공사비 상향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유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자문 대상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를 상향하여 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나.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사유 규정 신설(안 제5조, 제6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 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및 출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총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를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제2항 중 “제11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는 영 제 20조에 따른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원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3항 중 “제6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표지)

기 술 자 문 요 청 서

사업명

년 월 일

요청기관명	
설 계 자	

(내지)

기 술 자 문 요 청 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심의를 요청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2. 공 사 명 :

3. 공사개요 :

4. 공사위치 :

5. 소요공사비 :

6.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요청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자문 심의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심의내용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주)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심의 사항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심의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분야 심의위원 : (인)

남양주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설 계 변 경 자 문 요 청 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변경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초 설계 금액 :
- 변경 설계 금액 :
6. 착 공 예 정 일 :
- 준 공 예 정 일 :
7. 계 약 업 체 명 :
8. 변 경 사 항 :
9.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요청부서장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2. <u>총공사비 20억원(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총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상인 건설공사</u></p> <p>3. 삭제</p> <p><u><신설></u></p> <p>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u>위원회의 심의를</u></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및 출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총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u></p> <p>4. <u>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u></p> <p>② ----- ----- ----- <u>기술자문을 받지</u></p>

거치지 아니한다.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통합 회의 시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생략)

제8조(회의) ① 삭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2조제3항-----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조제2항-----

-----.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9조(회의)

② ----- 제8조제1항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
 - 위원회 운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별도의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교통국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12. 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